**경조금지급규정**

**제1조(목 적)**

이 규정은 이 회사 구성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

회사 구성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구 분)**

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축의금
2. 조의금
3. 위로금

**제4조(지급기준)**

① 경조금의 지급기준은[별표 1]과 같다.

②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.

③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.

**제5조(지급신청)**

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○개월 이상 근속한 구성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경조금을 신청한다.

③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○개월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

**제6조(지급방법)**

①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③ 총무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○일 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발생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예외지급)**

1년 이상 근속한 여구성원이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2개월 내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정한 결혼에 대한 축의금을 지급한다.

**제8 조(재해의 범위)**

이 규정의 재해는 천재지변,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업무외의 사고에 의한 재산상, 신체상의 피해를 말한다. 다만, 이 경우 화재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결정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

이 규정은 ○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

**〔별표 1〕**

**경조금지급기준표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 분 | 내 용 | 금 액 | 비 고 |
| 축 의 금 | 부모 및 처부모 회갑 | 원 |  |
| 조부모 회갑 | 원 |  |
| 본인 결혼 | 원 |  |
| 자녀 결혼 | 원 |  |
| 형제자매 결혼 | 원 |  |
| 자녀출산 | 원 |  |
| 조 의 금 | 부모 및 처부모, 배우자상 | 원 |  |
| 자녀상 | 원 |  |
| 조부모, 백․숙부모상 | 원 |  |
| 형제자매상 | 원 |  |
| 위 로 금 |  |  |  |